

2015학년도 정시모집

신입생 모집요강

‘나’ 군 • ‘다’ 군



감리교신학대학교

지원자 유의사항

1. 지원 시 유의사항

- 가. 수시모집 대학에 합격(충원 합격 포함)한 경우 정시모집 지원을 금지합니다.
- 나. 정시모집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간에는 복수지원을 금지합니다.
- 다. 위의 가항, 나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학 후라도 입학이 취소됩니다.
- 라. 접수된 입학 지원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전형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 본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지원자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 마.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실시하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바.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사. 대입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학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가. 원서접수 마감 당일(2014년 12월 24일) 18:00시까지 반드시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포함)를 완료해야 합니다.
- 나.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지원 사항을 입력하고 전형료 결제 후 발송용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서류를 본교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서류 도착 확인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 유아세례인 경우에는 입교일 또는 유아세례일자를 기재합니다.
- 라. 지원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출신고교 전화번호 및 보호자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마. 자기소개서는 각 항목별로 1,000자 ~ 1,500자 이내로 직접 작성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바. 자기소개서는 2014년 12월 28일(일)까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마감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사. 수험표를 출력하여 ‘나’ 군 2015년 1월 13일(화), ‘다’ 군 2015년 1월 21일(수) 전형일 당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아. 제출서류는 2014년 12월 31일(수) 17:00까지 반드시 도착하여야 합니다. 미도착 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시 ‘나’ 군과 ‘다’ 군을 복수지원한 경우 제출서류는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합격자 유의사항

- 가. 본교와 다른 대학에 이중 합격한 자 중 본교에 입학を 원하지 않는 자는 등록포기 각서를 교무처 입시관리과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하지 않는 자는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합격취소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는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예비후보자는 추가합격 사실 통보에 대비하여 2015. 2. 11(수)까지 반드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추가합격 통보 시 등록포기자는 등록포기각서를 교무처 입시관리과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2015. 2. 4(수) 09:00시 이후에 추가합격 통보를 받은 추가합격자는 지체 없이 합격통지서를 수령하고 안내하는 등록기간에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마. 추가합격자 통지는 해당일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며, 경우에 따라 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 연락처로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화번호 오기, 통신두절, 24시간 이상 수신자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바.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사.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나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학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이 사항을 위반하여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일 반 전 형

1. 모집인원

모 집 시 기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전 공
정시 '나'	신 학 부	60명	신학 전공 기독교교육학 전공 종교철학 전공
정시 '다'	신 학 부	10명	

- ※ 1. 2015학년도 학부제(신학부)로 모집한 학생은 1학년(1, 2학기)을 이수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전공(신학전공, 기독교교육학전공, 종교철학전공)을 결정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합니다.
2. 수시모집에서 결원된 인원은 정시모집 '나' 군 인원에 추가하여 선발합니다.
3. 고등학교 이수계열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4. 정시 '다' 군과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자격

-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 2) 법령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나. 상기 '가' 항의 해당자로 기독교 세례를 받은 자

3. 전형일정

모집시기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정시 '나'	원 서 접 수	2014. 12. 19(금) 09:00 ~ 24(수) 18:00	www.uwayapply.com
	서류제출기간	2014. 12. 31(수) 17:00까지	본교 교무처(우편발송) 도착분에 한함
	시험 및 면접	'나' 군 2015. 1. 13(화) 13:00 ~	본교 종합관
		'다' 군 2015. 1. 21(수) 13:00 ~	
	합격자 발표	2015. 1. 28(수) 10:00	본교 홈페이지 (www.mtu.ac.kr)
	등 록	2015. 1. 30(금) ~ 2. 3(화)	지정은행
	1차 미등록 충원 발표	2015. 2. 4(수) ~ 5(목)	본교 홈페이지 (www.mtu.ac.kr)
	1차 미등록 충원 등록	2015. 2. 6(금) ~ 9(월)	지정은행
정시 '다'	2차 미등록 충원 발표	2015. 2. 10(화) ~ 11(수) (미등록충원 합격통보 마감 : 2. 11(수) 21:00)	본교 홈페이지 (www.mtu.ac.kr)
	미등록충원 합격자 등록마감일	2015. 2. 12(목)	지정은행

4. 제출서류

- 가. 지원자 입력 (인터넷 입력)
 - 1) 입학원서
 - 2) 자기소개서
- 나. 등기우편 발송
 - 1) 답임목사 추천서 (소정양식, 밀봉하여 접수)
 - 2) 학교생활기록부
 - (* 2010년 2월 ~ 2014년 2월 졸업자,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동의자는 제외)
 - (* 온라인 부동의자, 비대상교 출신자는 출신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제출 / 학교장 원본대조필)
 -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2010년 ~ 2014년 합격자중 온라인 동의자 제외)
 - 3) 졸업자는 출신학교 졸업증명서(온라인 동의자 제외, 온라인 부동의자 및 2009년 2월 이전 졸업자 제출)

5. 사정원칙

- 가. 수학능력시험성적, 학생부성적, 성경시험성적, 면접(구술)시험성적을 합산하여 성적순에 의거 사정합니다.
- 나. 동점자에 대한 사정은 (1) 수학능력시험성적 (2) 학생부성적 (3) 성경시험성적 순으로 결정합니다.
- 다. 입학 성적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학에서 정하는 사정원칙에 따라 합격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 라. 면접에서 “F”를 받은 자는 학생부, 수능, 성경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6.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모집시기	학생부	수 능	성경시험	면접(구술)	계
정시 ‘나’	20% (200점)	60% (600점)	10% (100점)	10% (100점)	100% (1,000점)
정시 ‘다’		80% (800점)	20% (200점)		100% (1,000점)

나. 전형요소

- 1) 성경 시험 (성경 : 개역개정 4판 지정)
 - ① 출제수준 : 교회학교 과정을 이수하면서 알고 있어야 할 성경지식과 교회생활에 관한 일반적 지식
 - ② 출제내용 : 구약·신약 성경 각 20문항, 교회생활에 필요한 일반적 지식 10문항(객관식 및 단답식)
- 2) 면접 및 구술시험
 - ① 면접방법 : 5개 문제 중 1개 문제 선택. 질문내용은 신학, 영성, 인성, 사회분야가 혼합된 형태로 출제되며 2인 교수가 질문하는 심층 면접
 - ② 면접활용자료 : ㉠ 학생부 ㉡ 답임목사 추천서 ㉢ 자기소개서
 - ③ 면접기준 : ㉣ 대학지원동기 ㉤ 의사표현력 ㉥ 인성과 적성 ㉦ 기초 성경지식 ㉧ 교회활동경력 ㉨ 태도
 - ④ 면접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⑤ 면접에서 “F”를 받은 자는 수학능력시험성적 및 학생부 성적 등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7.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가. 학년 요소별 반영비율과 실질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 총점	학년별 반영비율(%)			학생부 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성적	출결상황	봉사활동	계	
200점	100	100	100	90 (180점)	5 (10점)	5 (10점)	100 (200점)	23.68

나. 교과성적 반영방법

- 1) 반영교과목
 - 1학년 국어, 사회, 영어 학기별 각 1과목
 - 2학년 국어교과목, 사회교과목 또는 과학교과목, 영어교과목 학기별 각 1과목
 - 3학년 국어교과목, 사회교과목 또는 과학교과목, 영어교과목 학기별 각 1과목
- 2) 지정 교과목이 없을 경우 적용하는 우선순위 과목은 ① 사회교과목 또는 과학교과목 ② 제2외국어 교과목 순으로 선택 ③ 그 외는 본교에서 대체과목 순에 의거 지정
- 3) 교과목 성적 산출
 - : 2010년 2월 ~ 2014년 2월 졸업자,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 ㉠ 학교생활기록부에 표기된 석차등급(1~9등급)을 활용하여 반영
 - ㉡ [점수 평균산출 공식] : 기본점수 20점
$$\text{기본점수} + \{[(9 - \text{반영과목의 평균등급}) / 8] \times (\text{최고점수} - \text{기본점수})\}$$
- 4) 수능비교내신 적용자 (학교생활기록부 비적용자)
 - : 본교 자체기준으로 수능성적을 활용하여 학생부 성적 산출 [8항의 “나”항 참조]
 - ① 2009년 2월 졸업 이전 고교졸업자
 - ②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 ③ 검정고시 출신자
 - ④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 ⑤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 ⑥ 공업계 2 + 1 체제 이수자

다. 비교과성적 반영방법

구 분	사교결석일수	점수	봉사시간	점수
최 고 점	0 일	10	10시간 이상	10
최 저 점	10일 이상	0	0시간 이하	0
등급간점수차	결석일 1일당	1	봉사시간 1시간당	1

8. 수능성적 반영 방법

가. 수능성적

구 분	수능영역별 반영비율(%)		
	국어 A / B	영어	탐구(사탐 / 과탐 / 직탐)
반영비율 (%)	40	40	20

1) 수능성적은 『영역별 과목별 백분위』를 사용한다.
2) 탐구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중 자유선택하며, 반영방법은 탐구 1영역 선택에서 1과목을 반영한다.
3)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 수학능력 성적 활용 합산 점수 공식(100점 기준)
[국어 x 0.4 + 영어 x 0.4 + 사탐/과탐/직탐 중 선택 탐구영역) x 0.2]
• **가산점 : 국어 B영에 총점(취득점수)의 3%**

나. 수능성적으로 학생부성적을 대신하는 경우
: 백분위 수능성적 활용 합산 점수를 반영

9. 시험시간표 및 유의사항

가. 시간표

모 집 시 기	일 시		시 험 과 목
정시 ‘나’	2015. 1. 13(화)	13:10 ~ 14:00 (50분)	성경시험
		14:10 ~	면접 · 구술시험
정시 ‘다’	2015. 1. 21(수)	13:10 ~ 14:00 (50분)	성경시험

- 나. 시험당일 지참물 : 수험표, 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검정볼펜, 싸인펜, 수정테이프
다. 시험 시 부정행위자는 즉시 퇴실 당하며, 모든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라. 시험시간 중 퇴실할 수 없으며, 면접이 끝난 후에 각자 퇴실, 귀가합니다.
마. 시험장에는 휴대폰, 전자사전 등을 휴대할 수 없습니다.

10. 전형료

65,000원

11. 특 전

- 가. 장학금을 비롯한 대내외 각종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수석 : 4년 장학금, * 차석 : 2년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수능성적우수 장학금)
나. 입학 후 군종장교 시험에 합격하면 소정의 과정을 거친 후 군종장교로 임관할 수 있습니다.
다. 기독교교육학 전공자 중 정원의 5% (2명)는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졸업할 때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표시과목 : 종교).
라. 입학 후 2학년부턴 평생교육사 과정이수자는 졸업 후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2. 기 타

가. 신체장애자 중 성경시험, 면접시험 등에 응시하는데 장애가 있는 학생은 입학원서 접수 시 사전에 입시담당 직원과 상담하여 미리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3. 문의 및 제출서류 보내실 곳

- 가. 문의 : 교무처 입시관리과 ☎ (02) 3619 - 208, 203
o http://ipsi.mtu.ac.kr
o E-mail : ipsi@mtu.ac.kr
나. 제출서류 보내실 곳 : 120-701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56(냉천동 31) 감리교신학대학교 교무처 입시관리과

특별전형 : 농 · 어촌학생

1. 모집인원

모 집 시 기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전 공
정시 '나'	신 학 부	4 명	신학 전공 기독교교육학 전공 종교철학 전공

- ※ 1. 2015학년도 학부제 (신학부) 로 모집한 학생은 1학년 (1, 2학기) 을 이수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전공 (신학전공, 기독교교육학전공, 종교철학전공) 을 결정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합니다.
2. 수시모집에서 결원된 인원은 정시모집 '나' 군 인원내 추가하여 선발합니다.
3. 고등학교 이수계열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정시 '다' 군과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자격

- 가. 농·어촌지역 (읍, 면) 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2015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 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로 기독교세례를 받은 자
- 나.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 다.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 라. 졸업이후 또는 재학 중 읍, 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동”지역을 읍, 면으로 본다.

3. 전형일정

: 일반전형과 동일

4.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모집시기	학생부	수 능	성경시험	면접(구술)	계
정시 '나'	20% (200점)	60% (600점)	10% (100점)	10% (100점)	100% (1,000점)

- 가. 학생부반영방법 및 수능반영방법 등 성적산출방법에 대하여는 일반전형과 동일합니다.
- 나. 성경시험 및 면접 (구술) 시험 방법은 일반전형과 동일합니다.

5. 사정원칙

- 가. 수학능력시험성적, 학생부성적, 성경시험성적, 면접 (구술) 시험성적을 합산하여 성적순에 의거 사정합니다.
- 나. 동점자에 대한 사정은 (1) 수학능력시험성적 (2) 학생부성적 (3) 면접시험성적 순으로 사정합니다.
- 다. 입학 성적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 대학에서 정하는 사정원칙에 따라 합격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 라. 면접에서 “F”를 받은 자는 학생부, 수능, 성경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6. 제출서류

- 가. 지원자 입력 (인터넷 입력)
- 1) 입학원서
 - 2) 자기소개서
- 나. 등기우편 발송
- 1) 답입목사 추천서 (소정양식, 밀봉하여 접수)
 - 2) 학교생활기록부
(* 2010년 2월 ~ 2014년 2월 졸업자,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동의자는 제외)
(* 온라인 부동의자, 비대상교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제출 / 학교장 원본대조필)
 - 3) 졸업자는 출신학교 졸업증명서 (온라인 동의자 제외, 온라인 부동의자 및 2009년 2월 이전 졸업자 제출)
 - 4) 학교장 추천서 (소정양식)
 - 5)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및 지원자 주소 변경내용 기재)
 - 6)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주소이전 이력전체가 기재 된 것)
 - 7) 가족관계증명서 (이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8) 부와 모의 직장소재지 입증서류 (재직증명서 등)

7. 전형료

65,000원

8. 문의 및 제출서류 보내실 곳

- 가. 문의 : 교무처 입사관리과 ☎ (02) 3619 - 208, 203
- <http://ipsi.mtu.ac.kr>
 - E-mail : ipsi@mtu.ac.kr

나. 제출서류 보내실 곳 : 120-701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56 (냉천동 31) 감리교신학대학교 교무처 입사관리과

특별전형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 모집학부 및 모집인원

모 집 시 기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전 공
정시 '나'	신 학 부	3 명	신학 전공 기독교교육학 전공 종교철학 전공

※ 1. 2015학년도 학부제(신학부)로 모집한 학생은 1학년(1, 2학기)을 이수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전공(신학전공, 기독교교육학전공, 종교철학전공)을 결정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합니다.

2. 고등학교 이수계열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정시 '다' 군과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자격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 2) 법령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및 제11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다. 상기 "가", "나" 항의 해당자로 기독교 세례를 받은 자

3. 전형일정

: 일반전형과 동일

4.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모집시기	학생부	수 능	성경시험	면접(구술)	계
정시 '나'	20% (200점)	60% (600점)	10% (100점)	10% (100점)	100% (1,000점)

가. 학생부반영방법 및 수능반영방법 등 성적산출방법은 일반전형과 동일합니다.

나. 성경시험 및 면접(구술)시험 방법은 일반전형과 동일합니다.

5. 사정원칙

가. 수능능력시험성적, 학생부성적, 성경시험성적, 면접(구술)시험성적을 합산하여 성적순에 의거 사정합니다.

나. 동점자에 대한 사정은 (1) 수능능력시험성적 (2) 학생부성적 (3) 면접시험성적 순으로 사정합니다.

다. 입학 성적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 대학에서 정하는 사정원칙에 따라 합격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라. 면접에서 "F"를 받은 자는 학생부, 수능, 성경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지원자 입력(인터넷 입력)

- 1) 입학원서
- 2) 자기소개서

나. 등기우편 발송

1) 답입목사 추천서(소정양식, 밀봉하여 접수)

2) 학교생활기록부

(* 2010년 2월 ~ 2014년 2월 졸업자,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동의자는 제외)

(* 온라인 부동의자, 비대상교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제출 / 학교장 원본대조필)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2010년 ~ 2014년 합격자중 온라인 동의자 제외)

3) 졸업자는 출신학교 졸업증명서(온라인 동의자 제외, 온라인 부동의자 및 2009년 2월 이전 졸업자 제출)

4)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추가서류

①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증명서(소년소녀가장세대인 경우 / 시·군·구청장발급)

㉡ 아동복지시설장 추천서(국내 아동복지시설에 재원 중인 자)

㉢ 학교장 추천서(본 대학 소정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②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제출일로부터 7일내 발급한 증명서 제출)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시·군·구청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장애수당, 장애연금 차상위 부가 급여, 자활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경우/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발행)

㉢ 학교장 추천서(본 대학 소정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7. 전형료

35,000원

8. 문의 및 제출서류 보내실 곳

가. 문의 : 교무처 입시관리과 ☎ (02) 3619 - 208, 203

○ <http://ipsi.mtu.ac.kr>

○ E-mail : ipsi@mtu.ac.kr

나. 제출서류 보내실 곳 : 120-701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56(냉천동 31) 감리교신학대학교 교무처 입시관리과

특별전형 : 특수교육대상자

1. 모집인원

모 집 시 기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전 공
정시 '나'	신 학 부	인원제한 없음	신학 전공 기독교교육학 전공 종교철학 전공

※ 1. 2015학년도 학부제(신학부)로 모집한 학생은 1학년(1, 2학기)을 이수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전공(신학전공, 기독교교육학전공, 종교철학전공)을 결정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합니다.

2. 고등학교 이수계열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정시 '다' 군과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자격

가. 일반전형 지원 자격을 갖춘 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자 등록을 필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자(뇌성마비 포함)로 기독교 세례를 받은 자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로 기독교 세례를 받은 자

다. 수능영역 1개 과목은 최고 5등급 이상 받은 자(최저학력기준 적용)

3. 전형일정

: 일반전형과 동일

4.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모집시기	학생부	수 능	성경시험	면접(구술)	계
정시 '나'	20% (200점)	60% (600점)	10% (100점)	10% (100점)	100% (1,000점)

가. 학생부반영방법 및 수능반영방법 등 성적산출방법은 일반전형과 동일합니다.

나. 성경시험 및 면접(구술)시험 방법은 일반전형과 동일합니다.

5. 사정원칙

가. 수학능력시험성적, 학생부성적, 성경시험성적, 면접(구술)시험성적을 합산하여 성적순에 의거 사정합니다.

나. 동점자에 대한 사정은 (1) 면접시험성적 (2) 수학능력시험성적 (3) 학생부성적 순으로 사정합니다.

다. 입학 성적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 대학에서 정하는 사정원칙에 따라 합격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라. 면접에서 "F"를 받은 자는 학생부, 수능, 성경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지원자 입력(인터넷 입력)

- 1) 입학원서
- 2) 자기소개서

나. 등기우편 발송

- 1) 답입목사 추천서(소정양식, 밀봉하여 접수)
- 2) 학교생활기록부
(* 2010년 2월 ~ 2014년 2월 졸업자,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동의자는 제외)
(* 온라인 부동의자, 비대상교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제출 / 학교장 원본대조필)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 3) 졸업자는 출신학교 졸업증명서(온라인 동의자 제외, 온라인 부동의자 및 2009년 2월 이전 졸업자 제출)
- 4) 특수교육대상자선정신청서
- 5)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2010년 ~ 2014년 합격자중 온라인 동의자 제외

7. 전형료

65,000원

8. 문의 및 제출서류 보내실 곳

가. 문의 : 교무처 입시관리과 ☎ (02) 3619 - 208, 203

- <http://ipsi.mtu.ac.kr>
- E-mail : ipsi@mtu.ac.kr

나. 제출서류 보내실 곳 : 120-701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56(냉천동 31) 교무처 입시관리과

특별전형 : 재외국민과 외국인

1. 모집인원

모집시기	모집단위	구 분	모집인원	전공	비 고
정시 '나'	신 학 부	입학정원 2% 이내 재외국민과 외국인	4명	신학전공 기독교교육학 전공 종교철학 전공	순수외국인 등 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별도 모집

※ 1. 2015학년도 학부제(신학부)로 모집한 학생은 1학년(1, 2학기)을 이수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전공(신학전공, 기독교교육학전공, 종교철학전공)을 결정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합니다.

2.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 학생의 전공별 배정인원은 학부제 전공배정 절차에 따릅니다.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원 서 접 수	2014. 12. 19(금) 09:00 ~ 24(수) 17:00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토, 주일은 휴무)
시험 및 면접	2015. 1. 13(화) 13:00 ~	본교 종합관
합격자 발표	2015. 1. 28(수) 10:00	홈페이지 (www.mtu.ac.kr)
등 록	2015. 1. 30(금) ~ 2. 3(화)	지정은행
1차 미등록 총원 발표	2015. 2. 4(수) ~ 5(목)	홈페이지 (www.mtu.ac.kr)
1차 미등록 총원 등록	2015. 2. 6(금) ~ 9(월)	지정은행
2차 미등록 총원 발표	2015. 2. 10(화) ~ 11(수) (미등록총원 합격통보 마감 : 2. 11(수) 21:00)	홈페이지 (www.mtu.ac.kr)
미등록총원 합격자 등록마감일	2015. 2. 12(목)	지정은행

3.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모집단위	국어시험	성경시험	면접(구술)	계
신 학 부	30% (300점)	30% (300점)	40% (400점)	100% (1,000점)

※ 순수외국인은 서류전형 및 면접 실시(필요한 경우 전화 인터뷰 실시)

4. 자격기준

가.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다음 각 1), 2)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독교세례를 받고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1) 기본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한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가)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나)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2)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가) 일반적 자격기준

구 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거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 교포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	2년	2년	2년	2년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이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학생(학생 본인만 외국인)	(한국인으로서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의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외국인	2년	2년	2년					

나) 기타 재외국민 (종전 규정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대상자)

대 상	지 원 자 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거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선교사 자녀	감리교단 소속단체에서 해외에 파견하여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선교요원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 소속연회 감독의 추천을 받은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목회자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다) 재외국민(정원의 2% 이내) 입학허용기간은 졸업 후 2년 6개월 이내입니다.

☞ 일반적 자격 기준 주요 해설

● 재학기간의 인정 기준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 단,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재학한 것으로 간주
- *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도 해석
(예: 중고과정 연속 3년 이상→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 학생의 지원자격이 되는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함,

●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

-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해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 해외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해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해외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입발령일까지의 기간

* 해외파견 근무자의 배우자(부 또는 모)에 대한 동반 체류 및 거주 의무 여부, 기간은 자율 설정

● 해외파견 근무자의 범위

- 공무원의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해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학생 본인만 외국인) 주요 해설

● 재학기간의 기준

- 수업 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이수한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을 의미함.
 - 외국 국적 취득후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경우는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보호자 동의 조건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은 학생 본인이 특별전형 자격대상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해외에서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이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 대상이 아님.

나. 정원 제한 없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다음 각 1)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독교세례를 받고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1) 일반적 자격기준

대 상	지 원 자 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학 재	생 거	거 주	체 류	보호자 거주	배우자 체류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12년	12년	12년	-	-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통일부 확인		-	-	-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초·중등 12년 과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국적		외국국적			

☞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주요 해설

● 전교육과정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하여야 하며,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 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인정이 되지 않음(단, 불가피한 국가 사정에 의해 모국 수학한 경우는 대하별 확인).
- 단,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함.

● 보호자 동의 조건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 북한이탈주민 주요 해설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98조)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사위원회를 둔다.
-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 교육감은 학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학력인정
- 또한, 각 시도교육감이 학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98조 1항 3호)
- 관련법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98조의 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98조의 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졸업한 초·중등 학교 소재국에 상관없이 지원 자격이 부여됨.

☞ 외국인 주요 해설

● 재학 인정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 소재 학교(외국인학교)를 불문하고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요건 부여(복수 국적자 제외)

<12년 미만 학제 졸업 인정>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 11학년제, 12학년제의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5. 사정원칙

- 가. 필답교사로 국어, 성경시험과 면접(구술)시험 성적을 일괄 합산하여 사정합니다.
- 나. 동점자 처리는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합니다.
 - 외국소재 학교의 재학기간이 많은 자
- 다.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 대학에서 정하는 사정원칙에 따라 합격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 라. 면접에서 “F”를 받은 자는 국어시험, 성경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6. 시험 시간표

시 간	시 험 과 목
13:10 ~ 14:00 (50분)	성 경 시 험
14:10 ~ 15:00 (50분)	국 어 시 험
15:10 ~	면접(구술) 시험

7. 제출서류

가. 외국 근무 재외국민(공무원, 상사직원 등의 자녀)

- 1) 입학원서 및 공통제출서류(교인증명서, 담임목사추천서, 자기소개서) (소정양식)
- 2)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 3)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 4)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 5)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 등본)
- 6) 출입국사실증명서(보호자·학생)
- 7)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보호자·학생)
- 8)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나. 외국영주 재외국민(교포자녀 등)

- 1) 입학원서 및 공통제출서류(교인증명서, 담임목사추천서, 자기소개서) (소정양식)
- 2)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4)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 등본)
- 5)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 6) 영주권 사본(부, 모, 학생)
- 7) 재외국민 등록필증(보호자, 학생)

다.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1) 입학원서 및 공통제출서류(교인증명서, 담임목사추천서, 자기소개서) (소정양식)
- 2)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 3) 초·중등 전과정 성적증명서
- 4)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라.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학생 본인만 외국인)

- 1) 입학원서 및 공통제출서류(교인증명서, 담임목사추천서, 자기소개서) (소정양식)
- 2)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4)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 한국국적과 취득한 외국국적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5) 국적상실 확인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말소 등본 또는 호(제)적 등본)
- 6) 외국국적증명서(학생 :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 7)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마.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1) 입학원서 및 공통제출서류(교인증명서, 담임목사추천서, 자기소개서) (소정양식)
- 2)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4) 출입국 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 5) 전가족 호적등본
- 6) 외국국적 증명서(부, 모, 학생 :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 7)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부모는 해당자에 한함)
- 8) 재정보증서류
 - ※ 공통필수서류 (재정능력 입증서류)
 - 등락금, 생활비 등 1년간의 평균 소요경비 이상의 본인 또는 부모(재정보증인)의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1개월 이상 계속 예치) 또는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재정보증인의 ①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재산세 과세증명서 ③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소정양식)

9) TOPIK 성적표(3급 이상)

바.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1) 입학원서 및 공통제출서류(교인증명서, 담임목사추천서, 자기소개서) (소정양식)
- 2)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4) 출입국 사실증명서(학생)
- 5) 전가족 호적등본
- 6) 외국국적 증명서(학생 :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 7)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 8) 재정보증서류
 - ※ 공통필수서류 (재정능력 입증서류)
 - 등락금, 생활비 등 1년간의 평균 소요경비 이상의 본인 또는 부모(재정보증인)의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1개월 이상 계속 예치) 또는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재정보증인의 ①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재산세 과세증명서 ③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소정양식)

9) TOPIK 성적표(3급 이상)

사. 북한이탈주민

- 1) 입학원서 및 공통제출서류(교인증명서, 담임목사추천서, 자기소개서) (소정양식)
-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 3) 학력증명서(교육감이 학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초등교육법 시행령 98조3항)

아. 기타 재외국민

- 1) 입학원서 및 공통제출서류(교인증명서, 담임목사추천서, 자기소개서) (소정양식)
- 2) 고등학교졸업(예정) 증명서
- 3)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 4)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 5)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 등본)
- 6) 출입국사실증명서(보호자·학생)
- 7)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보호자·학생)
- 8) 제3국 수화인정서 (해당자)

☞ 외국의 국·공·사립학교 발행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이 속한 국가가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인 경우

당국의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는 ‘공증’받은 후에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신청 할 수 있음). 이 경우, 별도의 “재외교육 기관확인서” 및 “영사확인”은 필요 없습니다.

●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이 속한 국가가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기관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공문서는 국무부(워싱턴)에서 발급하며, 주(state)의 공문서나 공증인의 공문서는 각 주 정부 국무부의 인증사무소(Secretary of State)에서 발급합니다. 재외동포는 우리나라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거주국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 위치 및 연락처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문의처

아포스티유 협약과 관련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영사서비스/비자’에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외교부 02-2100-7600, 또는 법무부 02-720-8027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 현황 105개국 (2013. 11. 7. 현재)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 대양주 (16)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유럽 (51)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북미 (1)	미국
중남미 (24)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아프리카 (10)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3)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 협약 가입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 상단 메뉴 오른쪽 ‘외교부 소개’, 세부메뉴 ‘재외공관’ 클릭 → 해당 지역별(대륙) 홈페이지 클릭 → 해당국가 지역을 관할하는 우리나라 재외공관명 클릭(해당 공관 홈페이지 이동) → 상단 메뉴 ‘영사’, 보통 세부메뉴 ‘공증’란 클릭하면 관련 문서 중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문서에서 관련정보 확인 가능

※ 최신 협약가입국 현황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홈페이지(www.hcch.net)에서 확인할 수 있음

8. 전형료

70,000원

9. 지원방법, 절차 및 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제출 시 지원자의 국내·외 연락처, 현주소 명기).

나. 본교의 전형에 불참하거나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전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원서접수 시 부적격자, 자격미달자의 입학지원 관계서류는 지원자에게 반려합니다.

라.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학 후에라도 합격과 입학사실을 모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 및 입학자격을 무효로 합니다.

아.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위반자는 금지된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후라도 모두 불합격 및 제적 처리합니다.

자. 외국인 특별전형 중 이중국적보유자는 내국인으로 보아 특별입학을 불허합니다.

차. 수시모집 대학에 합격(총원 합격 포함)하여 등록한 자나 본 대학과 정시모집 입시 군 (‘내’군, ‘다’군)이 같은 타 대학 지원자가 본교에 지원하였을 경우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합니다.

카. 본 전형은 정원의 입학으로 일반전형과 교차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지원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5학년도 본교 신입생 모집요강을 준용합니다.

10. 문 의

교무처 입시관리과 ☎ (02) 3619 - 208, 203, 82- 2 - 3619 - 208, 203

○ <http://ipsi.mtu.ac.kr>

○ E-mail : ipsi@mtu.ac.kr